

청주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가단684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11지분에 관하여

가.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2022. 11. 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청주지방법원 2023. 3. 31. 접수 제279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D은 2021. 2. 9.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하였다.
- 소외회사는 2022. 12. 26.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3. 1. 10.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2023. 9. 6. 담보물인 차량을 주식회사 F에 대금 9,000,000원에 매도하여 위 대금을 수령하고 그 중 1,118,477원을 비용에, 7,881,523원을 이자에 변제충당하였다. 2023. 9. 8. 현재 남은 대여원리금 채권액은 원금 20,203,042원, 이자 1,419,793원을 합한 21,622,835원이다.
- D의 망부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다가 2022. 11. 9.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D, H, I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2023. 3. 31. 피고 명의로 ‘2022. 1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양수한 D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이에 살피건대,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상속한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이 상속한 1/11지분(= 망인의 지분 1/2 × D의 상속분 2/11)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D은 청주지방법원 2023개회7297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그 개인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11 지분의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위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실익이 없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시까지 중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2014. 5. 29.

선고 2013다73780 판결 등).

D이 2023. 9. 6. 청주지방법원에 2023개회7297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D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데 어떤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또한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하여 2023. 3.
3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